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문화국 주민생활지원과)

(제정) 2008.10.15 조례 제 607호

(일부개정) 2011.01.07 조례 제 806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1089호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2015.09.09 조례 제1149호

(일부개정) 2019.07.01 조례 제1534호

(일부개정) 2019.10.02 조례 제15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9, 2019.7.1, 2019.10.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 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적·자폐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 등록되어 있는 사람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세대 및「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세대
- 5.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생계곤란자 및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자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0.2.>

- 1. 명절 위문금품
- 2. 교육관련 경비
- 3. 재가 장애인 장애수당
- 4.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5. 긴급구호비

제4조(지원기준 등)

- ① 제3조의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수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며, 지원대상별 지원기준은 별표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제3조제4호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제2조제4호에 해당

되는 대상자의 명단을 통보받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 사로 일괄 지급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 ① 지원대상자 결정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장이 신청을 받아 조사 및 추천한 자와 학교, 시설, 단체(기관), 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② 제2조제4호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의 협조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다.
- ③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 급여 수급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9.9>

제6조(지원신청 및 조사)

- ① 제5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직권 조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학교, 시설, 단체(기관), 협의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8.10.15. 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7.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1. 조례 제1089호)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양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⑧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2015.9.9.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2.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